

2022년 1월 7일 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결정(2022년 1월 12일 일부 수정)
2022년 1월 27일 변경 2022년 2월 3일 조치구역 변경

“만연방지 중점조치” 지정에 따른 오키나와현 대처방침

【요청기간】2022년 1월 9일(일)~2월 20일(일)
(조치구역변경은 2월 7일(월)부터 적용)

실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급속 감염 확산 억제를 목표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 경로를 줄여 전 현, 나아가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현민 및 사업자에게 요청함.

조치 구역

오키나와 본섬 전역, 야에야마 지역, 오키나와 본섬 주변 낙도 39시정촌

(나하시, 기노완시, 우라소에시, 나고시, 이토만시, 오키나와시, 도미구스쿠시, 우루마시, 난조시, 구나가미촌, 오기미촌, 히가시촌, 나키진촌, 모토부정, 온나촌, 기노자촌, 긴정, 요미탄촌, 가데나정, 자탄정, 기타나카구스쿠촌, 나카구스쿠촌, 니시하라정, 요나바루정, 하에바루정, 야에세정, 이시가키시, 다케토미정, 요나구니정, 이에촌, 도카시키촌, 자마미촌, 야구니촌, 도나키촌, 미나미다이토촌, 기타다이토촌, 이헤야촌, 이제나촌, 구메지마정)

조치 외 구역

미야코 지역 2개 시촌
(미야코지마시, 다라마촌)

【급속 감염확산을 억제해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현황>

- 만연방지 중점조치 지정에 따른 대책은, 오미크론 변이주로 인한 폭발적인 감염확산 억제(1/7일 시점 전 주 대비 17배에서 1/26일 시점 전 주 대비 0.8배)라는 목적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감염 확산이 지속되었던 고령자의 감염자수 증가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입원자가 감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신규양성자 : 1/18-24 1주 간 1321명에서 1/25-1/31 1주 간 1281명)
- 의료종사자를 비롯한 필수 노동자 사이에서의 감염이 퍼지고, 휴업중인 직원이 급증하는 등 사회 인프라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며 급속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 철저”, “백신 접종 추진”에 더해, 불특정 다수 사람과 식사를 하는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기 자신, 소중한 사람,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바이러스를 가정으로 옮기지 않을 것”을 철저히 지키며, 손 씻기 등의 “위생철저” “마스크 착용” 매일 체온 측정을 하는 등의 “건강관찰”,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격리하며 휴식을 취하고, 가족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치의에게 상담·현 콜센터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미야코 지역은 신규양성자수 감소와 병상사용율 50%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2월 7일(월)부터 조치구역에서 제외합니다.

현의 방침 및 노력

- 현은 ①전 연령대의 감염재확산을 방지해 의료제공체제를 유지 ②고령자의 감염확산을 억제해 중증화 사례를 감소 ③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현민·사업자 등에 대해 요청 및 주의를 실시한다.
- 감염자 감소 및 의료제공체제 개선이 진행된 경우에는, 조기 해제를 검토한다.
또한 각 권역별 조치구역 해제는 권역별 감염상황이나 의료체제 상황을 감안해 지역 의견 등을 토대로 검토한다.

현민 여러분께(현 내 전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법 제31조의 6 제2항 : 중점조치로서의 요청】

외출 및 이동에 관한 요청

-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로의 외출 및 이동을 자제할 것**(법 제24조 제9항)
혼잡한 장소나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특히 야간)로의 외출을 삼가고,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는 가족 또는 평소 함께하는 사람과 행동할 것.
- **불필요하게 현 외로 왕래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 주십시오**(법 제24조 제9항)
특히 만연방지 중점조치 지역과의 왕래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왕래가 필요한 분은 출발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를 받을 것. 또한, 왕래 전에는 건강관찰을 하며 방문하는 도도부현의 주의사항에 따를 것. 오kina와에 돌아온 뒤에는 빠르게 PCR 검사를 받으며, 1주일 동안은 가족 이외의 사람과 식사는 삼가할 것.
- **불필요하게 낙도로 왕래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법 제24조 제9항)
현 내 낙도와의 불필요한 왕래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왕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등 검사를 받을 것.
- 계모임, 비치파티 등, 음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동거가족이나 항상 함께 있는 분과 4명 이하 · 3밀 회피 · 2시간 이내로 개최할 것(법 제24조 제9항)
- **영업시간 단축이 요청된 시간 이후, 음식점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을 것**(법 제24조 제9항 · 법 제31조의 6 제2항)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의 이용을 삼가며, 오kina와현이 인증하는 “감염방지대책 인증점”을 이용해 주십시오.
- 매일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통근, 통학, 외출 등을 자제한다. (법 제24조 제9항)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현 내 전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 요청】

회식(식사)에 관한 요청

- ◆ 회식은 동거가족이나 항상 함께 있는 사람과 4명 이하 · 2시간 이내로 가질 것
 - ◆ 음식점이 요구하는 감염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체온측정, 크게 떠들지 않기, 대화 중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등)
 - ◆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 이용을 삼가며, "감염방지대책 인증점"을 이용할 것
 - ◆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이용은 가급적 삼가할 것
 - ◆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을 느낀다면 참가하지 않기, 참가시키지 않기
 - 자택 등 음식점 이외에서의 회식도 마찬가지로 주의
- ※불특정 다수가 모여, 혼잡이 예상되는 자리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자리)

※동거가족 등과 4명 이하, 3밀을 피해, 2시간 이내, 1차까지만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에 관한 요청

- 가장 강력한 감염증 대책인 백신 접종을 부탁드립니다.
-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땐 근처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발열이 있다면 현 콜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철저히【마스크(부직포 마스크 권장) 착용, 자주 손 씻기, 환기 철저】
- 오키나와현민 중 감염이 걱정되시는 분은, 무료로 PCR 검사 등을 실시중이므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무료검사를 2월 28일까지로 연장)
- ◆ 백신을 2회 접종하신 분이더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 대책을 계속해 주십시오.

방문자(오키나와 방문을 검토중이신) 여러분께

【방문 전 : 협력의뢰】

【방문 후 : 법 제24조 제9항에 따른 협력요청】

왕래에 관한 부탁

- 거주지 지사의 도도부현간 이동에 관한 요청에 따라, 오키나와현에 방문하실 때는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키며, 5인 이상의 회식은 삼가 주십시오.
- 감염이 확산중인 지역(만연방지 중점조치 지정 지역 등)에서의 방문은 정부의 기본적인 대처방침에 따라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대상자 전원을 검사를 받은 자”, “수험, 진찰, 업무 등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오키나와현 방문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건강관찰을 하며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중지하거나 연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키나와현 방문 시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 등으로 음성임을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가 하네다, 나리타, 주부, 이타미, 간사이, 후쿠오카 공항에서 오키나와현으로 도착하는 항공편 탑승자 중, 희망자에게 무료로 PCR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월 20일~2월 28일까지(주1))

※ 방문 전에 검사를 받지 못하신 분은 나하공항, 미야코공항, 시모지시마공항, 신이시가키공항, 구메지마공항 도착시에 PCR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 현 방문 시에는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이나 호텔 등의 이용을 삼가며, “감염방지대책 인증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의 이용은 가급적 삼가해 주십시오.
- 오키나와현 방문 중,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여행자 전용 상담센터 오키나와에 상담 바랍니다.

【여행자 전용 상담센터 오키나와(“TACO” : Traveler's Access Center Okinawa)】

전화번호 : 098-840-1677 운영시간 : 8:00~21:00(연중무휴)

○수학여행은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지킨 뒤 별도 '오키나와현 수학여행 방역관광가이드라인'등을 준수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주1 : https://corona.go.jp/passengers_monitoring/ 내각관방 홈페이지 하네다공항 등과 오키나와현 내 공항을 연결하는 비행편의 탑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검사

조치구역 음식점에의 요청

【영업시간 단축 및 감염방지 협력 요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법 제31조6 제1항 : 중점조치로서의 요청】

기간	2022년 1월 9일(일) 부터 2022년 2월 20일(일)
대상시설	[음식점]음식점(배달 및 포장은 제외)※포장에는 슈퍼, 도시락 가게 등의 이트인 스페이스가 포함된다 [유흥시설·결혼식장 등]바, 노래방, 결혼식장 등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운영허가를 받은 점포
요청내용	<p>【법 제31조6제1항에 따른 것 : 명령, 과태료등의 대상이 되는 요청】※평소 영업시간이 5시~20시까지인 점포는 협력금 대상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방지대책 인증점”은 영업시간을 5시에서 21시까지(주류의 제공은 11시부터 20시까지)로 하거나, 또는 영업시간을 5시부터 20시까지(주류를 제공하지 않을 것·반입을 포함)로 한다 감염방지대책 인증점 중 음식점에서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밀집을 피하고 환기를 하는 등 감염대책을 철저히 한다 ➢ 기타 음식점은, 영업시간을 5시에서 20시까지로 한다(주류를 제공하지 않을 것·반입을 포함) 음식점(노래방 이외(단란주점·스낵 등))은 노래방 설비 이용을 자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방지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의 입장을 금지(대화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 ○아크릴판 설치(또는 좌석 간격을 1m 이상 확보 및 정면 좌석 배치 금지) 등 ○이외에도, 특조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각 호로 규정하는 조치 (종업원에게 검사 권장, 입장자의 정리유도, 발열 등 유증상자의 입장 금지, 손 소독설비 설치, 사업소 소독, 시설 환기) <p>【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한 것 : 협력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그룹·한 테이블은 원칙 4명 이내(예외 : 도움이나 개호가 필요한 경우) ※감염상황 및 검사체제의 포화 상황을 감안해 “백신 검사·패키지” 및 “대상자 전원 검사”에 따른 인원 제한 완화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이 실시하는 감염방지대책 촉진 순회사업에의 협력 ○환기 철저, 이용자의 체온 검사,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 ○“감염방지대책 인증점” 취득 권장 (※결혼식 등의 행사 개최는 “행사 개최에 대한 요청”에 따라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협력금은 협력 요청인 **2022년 1월 7일** 이전에 음식점 영업허가증을 취득했으며, 일반영업중인 음식점이 요청에 응한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으로 한다. 또한, 오키나와현 내에서 신종 오미크론 변이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1월 4일까지 영업하던 점포가 현 내 경계 레벨이 “레벨 2”가 된 1월 4일부터 요청 개시 하루 전인 1월 8일까지 자주적으로 임시휴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요청에 따른 경우에 협력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자주적인 임시휴업일은 협력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시 이후에 일반 영업을 하는 점포가 휴업한 경우의 협력금은 감염방지대책인증점·비인증점을 따지지 않고 같은 금액으로 한다.

조치구역 이외 음식점에의 요청 (미야코지마시, 다라마촌)

【감염방지대책 협력요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기간	2022년 2월 7일(월)부터 2022년 2월 20일(일)
대상시설	[음식점] 음식점(배달·포장을 제외) [유흥시설·결혼식장 등] 바, 노래방, 결혼식장 등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
요청내용	<p>[감염방지대책 협력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한 그룹·한 테이블은 원칙 4명 이내(예외 : 도움이나 개호가 필요한 경우)</u> ※감염상황 및 검사체제의 포화 상황을 감안해 “백신 검사·패키지” 및 “대상자 전원 검사”에 따른 인원 제한 완화는 적용하지 않는다. ➤ <u>업종별 가이드라인 준수 등, 감염방지대책 철저(법 제24조 제9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에 검사 권장, 입장자 정리유도, 시설 환기 • 발열 및 기타 증상이 있는 자의 입장을 금지 • 손 소독 설비 설치, 사업소 소독 • 마스크 착용 및 기타 감염방지에 관한 조치 홍보 •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 등 감염방지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의 입장을 금지(대화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 • 아크릴판 설치(또는 좌석 간격 1m 이상 확보) ➤ 현·시정촌이 실시하는 감염방지대책 촉진을 위한 순회사업에 협력 ➤ “감염방지대책 인증점” 취득 권장 ➤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밀집을 피하고 환기를 하는 등 감염대책을 철저히 한다 <p>(※결혼식 등의 행사 개최는 “행사 개최에 대한 요청”에 따라 대응을 부탁드립니다)</p>

행사 개최에 대한 요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 행사 주최자에게, 규모요건 등(인원 제한 · 수용률 등)에 따른 개최를 요청

	시설 수용 정원(※1)		
	5,000명 이하	5,000명 초과 ~ 20,000명 이하(※3)	20,000명 초과(※4)
합성 없음	수용 정원까지 가능	수용 정원까지 가능(※3)	
합성 있음(※2)	수용 정원의 절반까지 가능		

※1 : 수용 정원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대로 한다. 또한, 합성이 있는 경우 수용 정원의 절반 및 5,000명 이하로 한다.

- 합성 없음 → 밀(密)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간격(최소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 합성 있음 →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분한 간격(되도록 2m, 최소 1m)을 확보하도록 한다.

※2 : '합성'은, '관객이 ①평소보다도 큰 소리로 ②반복 ·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필요한 대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합성 있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 감염방지 안전계획의 작성 · 실시를 조건으로 최대수용인원을 수용정원까지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4 : 감염상황 및 검사체제의 포화 상황을 감안해 "백신 검사 · 패키지" 및 "대상자 전원 검사"에 따른 인원 제한 완화는 적용하지 않는다.

- 주최자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시에 정부의 접촉 확인 어플(COCOA) 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 대책 퍼스널 서포트(RICCA) 도입 또는 명부 작성 등 추적 대책을 철저히 할 것.
- 참가자가 5,000명을 넘는 행사의 주최자는 적어도 개최 2주 전까지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담은 "감염방지안전계획"을 작성해 현에 제출할 것. 현의 요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기 ·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전국적인 감염확산이나 행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정부가 업종별 가이드라인의 수정 또는 수용률 요건, 최대수용인원의 재검토를 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
- 타 현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방문자에게 백신 접종 또는 사전 PCR 검사 등 음성 확인을 권장할 것
- 5,0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티켓 판매는 신중을 기할 것.
- 5,000명 이하의 행사는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감염대책을 철저하게 할 것(자세한 내용은 "행사 개최 제한에 대해"를 확인)

- 요청일로부터 3일간을 계도기간으로 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 판매가 시작된 티켓은 기간 종료 전까지 판매된 것에 한해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에 대한 요청(조치구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법 제31조6 제1항 : 중점조치로서의 요청】

상업시설, 집객시설에의 요청

특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으로 규정한 운동시설, 유기장, 영화관, 쇼핑센터 등의 시설에 아래의 감염대책을 요청한다. 또한, 각 방침의 실시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

【법 제31조6 제1항에 따른 요청】

- 입장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정리 및 유도, 입장자 수 관리 및 제한
- 입장자에게 마스크 착용 권고
- 감염방지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의 입장을 금지
- 대화 등의 비말을 통한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는 조치(특히 푸드코트)
(아크릴 판 등의 설치 또는 좌석 간격 확보, 환기 철저 등)

【법 제24조 제9항】

- 업종별 가이드라인 준수 등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 손 소독시설 설치와 이용자 등에 손 소독을 부탁, 종업원에게 PCR 검사를 권장
 - 발열 등 유증상자의 입장을 막기 위한 조치(입점시 체온검사·열화상카메라 설치)
 - 게임센터, 스포츠클럽 등의 유희시설에서는 입장 전 증상확인, 체온검사, 손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인정하지 않도록 의뢰(협력의뢰)

시설에 대한 요청(조치구역 이외)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협력요청 : 부탁】

상업시설, 집객시설에의 요청

특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으로 규정한 운동시설, 유기장, 영화관, 쇼핑센터 등의 시설에 아래의 감염대책을 요청한다. 또한, 각 방침의 실시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

- 업종별 가이드라인 준수 등 감염방지대책 철저(법 제24조 제9항)
- 입장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정리 및 유도
- 입장자에게 마스크 착용 권고
- 감염방지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의 입장을 금지
- 대화 등의 비말을 통한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는 조치(특히 푸드코트)
(아크릴 판 등의 설치 또는 좌석 간격 확보, 환기 철저 등)
 - 손 소독시설 설치와 이용자 등에 손 소독을 부탁, 종업원에게 PCR 검사를 권장
 - 발열 등 유증상자의 입장을 막기 위한 조치(입점시 체온검사 · 열화상카메라 설치)
 - 게임센터, 스포츠클럽 등의 유희시설에서는 입장 전 증상확인, 체온검사, 손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인정하지 않도록 의뢰(협력의뢰)

사업자 여러분에의 요청(현 내 전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사업자 · 경제계에서의 요청

- 국민생활 · 국민경제의 안정확보에 불가결한 업무를 가진 사업자 및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특성을 토대로, BCP(업무계속계획)를 재점검(미정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로 확정)할 것. 또한, 화상회의 및 재택근무(텔레워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철저히(출근시의 체온검사 등)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은 출근하지 않을 것 · 출근시키지 않을 것
- 종업원의 동거가족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장할 것
- 접촉기회 감소를 위해, 재택근무(텔레워크), 시차통근 확대 등 통근 · 업무시의 출근자수 삭감 및 밀집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
- 자사 종업원에게 단축된 영업시간 이후 음식점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 특히 영업시간단축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포 이용을 삼가도록 당부할 것
- 직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직장에서의 이동(휴게실 · 탈의실 · 흡연실 · 사원식당)에 주의할 것
- 직장에서 백신 접종을 권장할 것(접종하기 쉬운 환경 정비)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

사업자 여러분에의 요청(현 내 전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교통사업자에의 요청

- 주요 터미널에서 체온 검사를 실시할 것
- 항공, 선박,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종업원이 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BCP(업무계속계획)를 재점검(미정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로 작성)할 것

복지시설에의 요청

- 직원 및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며, 증상이 있는 분은 출근하지 · 출근시키지 않을 것
-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감염대책을 재확인 · 강화 할 것
- 종사자의 동거 가족 중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장할 것
- 종사자를 위한 정기PCR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
- 백신 접종을 권장할 것(1·2차 및 3차를 포함)
- 종사자가 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BCP(업무계속계획)를 재점검(미정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로 작성)할 것
- 감염확산 상황을 감안해, 이용자 및 그 가족에게 가정에서 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대체 서비스로 전환하여, 가급적 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하는 등의 협력을 부탁할 것

각 시정촌과 현의 연계 방침 실시

- 방재무선, 홍보차량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감염방지대책 홍보 및 지자체 등에 협력을 요청.
- 각종 시설, 공원 등의 관리자로서의 노력(노상, 공원에서의 집단 음주 등에 대한 주의환기를 포함).
- 발열시의 검진방법을 홍보(불필요한 구급검진 억제, 항원검사 키트의 활용방법, 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콜센터 098-866-2129).
- 시정촌에 양성자 정보를 제공하여, 현과 시정촌이 연계해 자택요양자의 지원에 임한다.
- 음식점에서의 순회 협력(감염방지대책 부탁, 영업시간 단축에 협력 부탁)
-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종사자, 고령자 시설 등의 종사자 및 입주자에 대한 백신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보육소 등 : 보육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감염대책과 아동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뢰함.

공공시설에서의 방침

- 박물관, 미술관이나 운동시설과 같은 현립 공공시설은 입장정리 등 혼잡을 방지하는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실시하며 운영하고, 시정촌에는 현과 같은 대응을 하도록 요청한다.
- 노상 및 공원에서의 집단 음주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줄이기 위해 시설 관리자에게 주의환기를 행하도록 의뢰한다.

학교에의 요청(조치구역)

- “학습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의 감염상황을 감안해, 분산등교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초등 및 중학교는 현립학교의 대응 등을 참고로,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의뢰한다.
- 위생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학교교육활동, 과외활동 및 학생 기숙사에서의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 단, 학교의 감염 상황에 따라 학급폐쇄등을 실시할 것.
- 학급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 배움의 기회를 보장한다.
- 건강상의 불안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 및 학생의 출석정지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며, 온라인을 통한 학습 지원을 위해 힘쓴다.
- 아동 및 학생의 가정 내 건강관찰을 철저히 하며, 본인 또는 동거가족에게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를 삼가도록 알린다.
- 학교 행사(송별회, 학교 축제, 수학여행이나 숙박학습 등)은 중지 또는 연기, 축소한다.
- 부활동은 중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3월 말까지 개최되는 규슈·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평일 90분 이내(아침연습 없음), 주말 및 공휴일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필요최소한의 인원으로 행한다. 또한, 지역구·현 대회에 참가 예정인 경우는 대회 2주 전부터 평일 90분 이내(아침연습 없음), 주말 및 공휴일 2시간 이내의 활동으로 하며, 필요최소한의 인원으로 실시한다.
- 대학, 전문학교는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이를 감염방지와 양립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응할 것
- 대학은 학생들에게 감염 위험이 높은 회식 등에 대해 4명 이하·3밀을 피하며·2시간 이내로 이용하도록 철저히 당부할 것.

학교에의 요청(조지구역이외)

- 위생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학교교육활동, 과외활동 및 학생 기숙사에서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 단, 학교의 감염 상황에 따라 학급폐쇄등을 실시할 것.
- 학급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 배움의 기회를 보장한다.
- 아동 및 학생의 가정 내 건강관찰을 철저히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엔 등교를 삼가도록 알릴 것.
- 학교 행사를 실시할 때는 지역의 감염상황을 고려해 장소나 시간, 개최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것.
- 부활동은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평일 90분 이내(아침연습 없음), 주말 및 공휴일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활동개시시·각 대회 전에는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 대학, 전문학교는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이를 감염방지와 양립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응할 것
- 대학은 학생들에게 감염 위험이 높은 회식 등에 대해 4명 이하·3밀을 피하며·자리를 2시간 이내로 가지게 하도록 철저히 당부할 것.

계절 행사에 대한 주의환기

① 귀성에 대해

- ◆ 사전 백신 접종 완료 또는 방문 전 PCR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귀성 전 10일간은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귀성 연기를 검토해 주십시오.
- ◆ 오키나와에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현 콜센터(098-866-2129)에 문의하며 외출은 삼가주십시오.

② 신년회 회식에 대해

- ◆ 회식의 빈도를 줄이며(특히 연일 회식), 동거하는 가족이나 항상 함께 있는 분과 4명 이하, 2시간 이내로 자리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 ◆ 감염대책이 실시중인 "감염방지대책 인증점"을 이용해 주십시오.

③ 구정 · 생일 축하 등의 행사에 대해

- ◆ 행사는 동거 가족 등 항상 함께 있는 사람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 고령자를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철저히 하며 불특정 다수와의 회식은 삼가 주십시오.

④ 수험 등으로 오키나와현에 방문하시는 여러분들께

- ◆ 매일 체온 검사를 실시하며, 타 현의 왕래 전에는 PCR 검사 등을 통해 음성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 시험 이외의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며, 혼잡한 장소, 불특정 다수와의 회식은 삼가주십시오.